KiRi Weekly

2016.5.23. 제385호

포커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이슈 분석

통합연금포털의 현황과 평가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필요성

글로벌 이슈

중동지역 보험시장의 성장둔화 가능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행태 분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포커스와 이슈 분석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KiRi Weekly 2016.5.23.
포커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기조를 반영하여 보험, 금융투자, 은행 등 여러 금융권역에 강화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경영에 대한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정하여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고된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1. 검토배경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령까지 제정을 마치고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2010년 3월[1] 부터 시작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논의가 대장정을 마치고 작년 7월 법률로 제정됨.
- 법률 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8일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제정절차가 마무리 됨.[2]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뿐 아니라 대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권역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며, 장기간의 논의과정이 말해 주듯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본고는 기존 보험업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함.
- 특히, 이사회 기능 강화, 업무집행책임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을 위주로 살펴봄.

1) 금융위원회는 2010년 3월 금융권역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음.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3.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의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권역[3]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통합적으로 적용되어, 그 동안 개별 금융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의 법적 일관성을 제고함(〈표 1〉 참조).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기조를 반영하여 보험, 금융투자, 은행 등 여러 금융권역에 강화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예를 들어, 기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보험, 증권,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에까지 적용하여 규제수준을 격상시킴.
- 주요 내용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변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임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도입 등으로 이루어짐.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지배구조 관련 조항인 제3장 제1절(보험회사 임직원) 및 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삭제되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대체됨.[4]

〈표 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구성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의 겸직
제3장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구성, 의장의 선임, 운영(지배구조내부규범), 권한
	이사회 내 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관리인,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책임자
제5장 대주주 건전성 유지		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 자격심사, 시정명령, 의결권 제한
제6장 소수주주 권리행사 특례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청구,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회계장부열람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행 강제금
제8장 보칙		권한의 위탁, 공시
제9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3)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상 자산 2조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자산 3천억 원 이상)과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에 적용됨. 단, 자산 2조 원 미만인 금융투자회사라도 운용자산이 20조가 넘는 경우에는 적용됨(시행령 제6조 제3항).

4) 보험업법에서 지배구조 관련 조항인 제13조(임원의 자격), 제14조(임원의 겸직 제한), 제15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제16조(감사위원회),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및 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각각 삭제됨.

가. 이사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금융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5]가 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함.[6]
-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은 3년[7]이 지나야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냉각기간을 늘려 자격요건을 강화함.
  - 또한 사외이사의 최대임기를 해당 금융회사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함.
- 강화된 사외이사 자격요건으로 인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축소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8]을 확대하여 사외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 금융회사가 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그 내용과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 점도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임.

- 지배구조내부규범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아야 함.
-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금융회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9]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여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였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10]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며, 운영도 사외이사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제고함.

---

5) 현행 보험업법은 1/2 이상.
6)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7) 현행 보험업법은 2년임.
8)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 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시행령 제8조 제4항).
9) 경영목표 및 평가, 정관 변경, 예·결산,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CEO 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행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10) 단, 보수위원회는 일부 대형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함.
  -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감사위원 중 한 명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도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때 추천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해야 함.
  -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11]로 제한함.

나. 업무집행책임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경영에 대한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

- 임원의 범위에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뿐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12]를 명시하였음.

■ 업무집행책임자 중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13]를 집행하는 사람은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별도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권한에 비례한 강화된 규율을 적용함.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1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못하며,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
12)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13) 경영전략수립 등 전략기획업무,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업무, 자산운용 등 위험관리업무(시행령 제9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도록 하였음.

-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함.
- 위험관리기준은 자산운용이나 업무 수행 및 각종 거래 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를 위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정하여,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14]하도록 하여 직무에 따르는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산운용 등 주요 업무는 겸직을 금지하여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이들의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며, 이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이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라.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도입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14) 자산 5천억 미만 은행,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와 자산 1천억 미만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직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하나(법 제25조 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조 2항), 이때에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선임이 불가함(시행령 제25조 5항).

- 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15]에 대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2년마다(필요 시 수시로) 심사함.
- 적격성 유지를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및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현행 보험업법은 진입 시에만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정조치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 조치, 기타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한 필요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의 법령 위반 정도가 과중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관계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시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고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 2008년 리먼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배구조 기본 원칙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음.

15)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반복하며, 순환출자의 경우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시행령 제27조).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구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16]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17]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감독에서 금융안정성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함.

- 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금융규제를 받아 왔으나, 시스템적 중요성이 낮은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권한이 확대되고 대주주에 대한 유지요건이 도입되는 등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도 주주와 보험계약자 및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여야 함.
- 업무집행책임자 및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으로 적어도 2년에 한 번 보험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여 보험회사 대주주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시키고 금융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KiRi

16) BCBS(2010),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17)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법 중 은행법에만 금융시장의 안정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음.